

제211회 임시회  
2003. 4. 22(화)

# 審　查　報　告　書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教育社會委員會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조례안

## 심사 보고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4월 2일(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3년 4월 3일
- 다. 상정일자 : 2003년 4월 17일(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 각급학교장, 촉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
- 기관간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일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교육감은 이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요구 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4조)
-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문서의 발신명의는 수임 받은자의 명의로 하고
- 교육감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 할 수 있으며
- 교육·학예·체육 등 위임사무의 세부내용은 별표 1, 2, 3으로 하는 것임.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석규)

-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다수의 개별법에서 위임을 받아 충청북도교육감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 지역교육청교육장, 각급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재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그러나 동 조례안의 금번 제정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제정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91.10.30)를 비롯한 6개의 광역시와 7개의 도가 대부분 '92년에서 '94년에 조례로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여 있음을 볼 수 있고
    - \* 광역시 : 부산('92.7.24), 대구('94.1.18), 인천('99.6.19 전면개정), 광주('92.5.7), 대전 ('93.9.14), 울산('98.11.25 전면개정)
    - \* 도 : 경기도('92.2.13), 강원도('94.4.3), 충남('92.9.7), 전북('92.1.11), 전남('99.4.7), 경북('92.6.16), 경남('92.5.4)
  - 제주도와 충청북도만은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은 '93년(전면개정)부터 이미 교육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부 위임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 수임기관의 업무처리 인력의 적정성 정도, 예산규모, 교육감의 수시 감사여부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이러한 사항을 지방자치 초기인 '91년 또는 '92년에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및 국법 체계의 정비를 하지 않고, 규칙으로만 제·개정(8차 개정)하여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는
-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88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함(안 제2조).
- 교육감은 이 조례로 위임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경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사건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으로 함(안 제7조).

재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6626호, 2002. 1. 26)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714호, 2002. 8. 14)
- 지방자치법(법률 제6669호, 2002. 3. 25)

재정조례안 : 불임

참고사항

- 기 타 : 입법예고('03.01.30 ~ 02.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원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의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교육감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7조(권한위임 사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7조 관련)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p>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p> <p>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과학·기술교육의 전통에 관한 사항</p> <p>다.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전통에 관한 사항</p> <p>라.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p> <p>마.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p> <p>바.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p> <p>사.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p> <p>자.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p> <p>차.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p>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2.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	
3. 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정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및각급학교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3조	
<p>4. 평생교육 운영 및 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가. 평생교육 운영 지도</p> <p>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수리</p> <p>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철·폐 신고 수리</p> <p>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철·폐 신고 수리</p>	<p>평생교육법 제12조제3항</p> <p>동법 제20조제1항</p> <p>동법 제23조제2항</p> <p>동법 제24조제3항</p>	

마.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보고 수리	동법 제25조제3항
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폐 신고 수리	동법 제26조제3항
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폐 신고 수리	동법 제27조제3항
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	동법 제29조
자. 청문	동법 제30조
차. 과대료 부과 징수	동법 제32조
5.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별성직 6급상당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선발·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공립 각급학교 일반직 6급이하 지방공부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6월이상)·복직(6월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공무원 선발·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동법 제6조제2항
7. 지역교육청·소속기관·공립 각급학교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외)	동법 제6조제2항
8.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동법 제7조
9.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부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10.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부원의 장기재직 휴가 허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제7항

11.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6급(상당)이하 지방 공무원의 겸직허가	통조례 제26조	
12. 소속기관·공립 각급학교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인증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 인조례 제12조	
13. 각급학교의 학급 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14.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	동법시행령 제52조	
15.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 ·폐지·변경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16. 각급학교의 학칙 제정·변경 인가 (단, 사립 초· ·중학교의 학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	동법 제8조	
17. 중학교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 립학교 정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 도·감독과 다음의 사항 가. 법인의 이사회 소집 승인 나.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다. 법인의 기본계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 경 및 담보허가 또는 신고 수리 라. 법인의 예산·결산 수리 마.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치명령 바. 법인의 보고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사.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장계 요구 아.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자. 과대료 부과 징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동법 제17조제4항 동법 제20조제2항 동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31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54조 동법 제70조 동법 제74조	
18. 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보조금 보조 결정 및 정산	동법 제43조	

19.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인의 차입 허가 나. 법인의 적립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증자보고 수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8조제2항 동규칙 제22조의2 동규칙 제45조
20.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및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직원 등록 관리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원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21. 소속 도서관 시설 사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사용료 징수액 승인 나. 열람시간 조정 승인 다. 휴관일 조정 승인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 에관한조례 제11조제2항 동조례 제12조제1항 동조례 제13조제1항
22. 소속 학생회관 시설 사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정기휴관일 승인 나. 사용료 승인 다. 사용료 감면율 승인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 제23조제1항 동조례 제26조 동조례 제27조제2항
23. 소속 야영장 시설 사용료 징수액 승인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 제33조제2항
24.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승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 및 제10조
25.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 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제1항

26.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전출금 교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 규칙 제10조
27. 관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다음의 사항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
가. 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동법 제6조
나. 영구시설물의 축소에 관한 사항	동법 제7조
다. 시장명령 등	동법 제8조
라. 광유재산심의회의 자문	동법 제9조
마.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28. 각급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11호
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나.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동법 제5조의 2
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평소 등과 관련된 사항	동법 제11조
라. 청문	동법 제11조의 2
마.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동법 제12조
바.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동법 제13조
29. 각급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조

[별표 2]

##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7조 관련)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령	비 고
1.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 (6월미만)·복직(6월미만 휴직)·의원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제획정·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3.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제적휴가 허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 무원복무조례 제22조제7항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견직 허가	동조례 제26조	
5.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비 감면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 규칙 제3조제1항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충청북도교육비복雠회계소속회계관 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제1항	

[별표 3]

##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7조 관련)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비고
1. 일반적 6급이하 및 기능적 지방공무원의 휴식 (6월미만)·복직(6월미만 휴직)·의원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보직부여	동일 제6조제2항	
3.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허가 허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제7항	
5. 소속 지방공무원의 점직 허가 (기관장 제외)	동조례 제26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제1항	